

	보도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래창조 금융 · 따뜻한 금융 · 튼튼한 금융
	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		
책임자	김홍식 단장(2156-3300)	담당자	황현일 사무관(2156-3311)
배포일	2015.8.26.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5매

제 목 :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
(회계사들이 감사대상 상장법인의 영업실적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)

1. 조치 개요

-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. 8. 26.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,
 - 회계감사 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지득한 상장법인 영업실적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서로 공유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한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9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하였음

2. 주요 위반 내용

- 공인회계사들 간의 회계감사대상 상장법인 미공개정보 전달 및 이용
 - ○○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甲은 A社의 회계감사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동사의 영업실적정보(이하 '실적')를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고,
 - 같은 회계법인 소속 동료 공인회계사 6인에게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B社 등 10개 종목의 실적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서 매매에 이용하였음
 - 또한 甲은 같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乙 및 △△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丙과 공모하여, 각자 동료 회계사들로부터 지득한 C社 등 7개 종목의 실적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매매에 이용함

[부당이득 금액 : 甲(536백만원), 乙(219백만원), 丙(8백만원)]

3. 향후 계획

- 동 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중 최초로 압수·수색 등 강제조사권*을 활용하여,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**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 연루된 다수의 회계사를 적발하였음
 - * (자본시장법 제427조)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을 수색하게 할 수 있음
 - **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·메시지 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·분석하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
-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하고,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예정임

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☎ 02-2156-3333)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(붙임)

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

1. A社 등 18개 종목 주식 및 주식선물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

가. 사건의 개요

-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서로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감사 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지득한 상장법인의 공시 전 영업 실적정보를 수집·공유하여 주식 및 주식선물 매매에 이용한 사건임

나. 조사결과

□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

- 甲은 2014년 10월 ~ 2015년 4월 기간 중 국내 대형 ○○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법인의 내부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
 - 자신이 회계감사업무에 참여한 상장법인 A社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지득하여 매매에 이용하고, 자신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상장법인 B社 등 10개사의 공시 전 실적정보 등은 같은 회계법인 소속 동료 담당 회계사인 丁 등 6인에게 요청하고 이를 받아 이용하는 한편,
 - 같은 회계법인 소속 동료 회계사인 乙과 공모하여 자신이 수집한 정보 중 2개사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乙이 이용하게 하고 乙로부터는 C社 등 5개 종목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받아서 이용하고,
 - 다른 대형 △△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丙과도 공모하여, E社 등 2개사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받아서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

18개 종목의 주식 및 주식선물을 매매(거래금액 : 주식선물 5,825백만원, 주식 3,299백만원)하여 총 53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

- 위 과정에서 乙은 자신이 수집한 C社 등 5개 종목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이용하고, 甲으로부터 2개사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받아서 이용하고, 甲에게 C社 등 5개 종목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

7개 종목의 주식 및 주식선물을 매매(거래금액 : 주식선물 3,435백만원, 주식 1,424백만원) 총 21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

- 또한, 丙은 동 과정에서 자신이 수집한 D社 등 2개사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이용하거나 甲에게 E社 등 2개사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

3개 종목의 주식 및 주식선물을 매매(거래금액 : 주식선물 274백만원, 주식 61백만원)하여 총 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

- 한편, 丁 등 대형 ○○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6명은 甲에게 상장법인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회계감사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지득하여 제공한 혐의가 있음

※ 상세 혐의 관계도 별첨 참조

다. 조치내용

- 고 발 : 甲 [前 ○○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]
乙 [前 ○○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]
丙 [現 △△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]

※ 회계사가 회계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상장법인의 실적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 등 고려

- 수사기관 통보 : 丁 등 6인 [前·現 ○○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]

※ 甲에게 회계감사 과정에서 지득한 상장법인의 실적정보를 제공한 점 등 고려

문의 : 자본시장조사단 황현일 사무관
(☎02-2156-3311)

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계도

